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11.14.)

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2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3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	17
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	20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3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	26
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29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손병태 농업축산과장]

- 가. 제안이유
 -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방역소의 설치 근거와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방역소의 시설을 정함(안 제3조)
 - 방역소의 기능을 정함(안 제4조)
 -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평시운영기간에는 필요시 실시
 -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등
 -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정함(안 제5조)
 - 특별방역기간 : 10월~이듬해 2월, 오전 9시~오후 10시

- 평시방역기간 : 3월~9월, 오전 9시~오후 6시
- 방역소 운영 인력 및 위탁을 정함(안 제6조)
 - 상주인력 1명 원칙
 - 방역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는 방역소의 시설에 대한 사항
 - 안 제4조는 방역소의 기능에 대한 사항
 -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평시운영기간에는 필요시 실시
 -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등
 - 안 제5조는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정함
 - 특별방역기간 : 10월~이듬해 2월, 오전 9시~오후 10시
 - 평시방역기간 : 3월~9월, 오전 9시~오후 6시
 - 안 제6조는 방역소 운영 인력 및 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본 조례안은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과 질병확산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는 재난형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상시방역기구로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방역소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90에 둔다.

제3조(시설) 방역소의 시설은 소독기, 세척기, 자재 보관창고, 사무공간, 그 밖에 방역소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다만, 평시방역기간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방역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기간·시간) ① 방역소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방역기간
 - 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평시방역기간
 - 가. 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9월까지
 -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② 특별방역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 ③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방역소에는 상주인력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가. 제안이유

- 천적곤충 생산·공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천적곤충 생산 및 공급 내용 신설(안 제6조)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 ~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적곤충 생산·공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는 천적곤충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및 제8조는 농업환경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는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거창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4.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적 및 현황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5. 그 밖에 군수가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천적곤충의 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천적곤충(「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천적곤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천적곤충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농업환경 개선) 군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군수가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군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천적곤충의 공급가격 결정
8.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업 관련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다. 친환경농업 관련 관계기관·단체의 대표자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원: 2년

2. 제1호 외의 위촉위원: 그 직에 있는 기간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 가. 제안이유
 -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 12. 23.자 만료 도래 예정으로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설명 : 거창푸드종합센터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주요시설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 저장고	선별장	화장실	
712.5㎡	180㎡ 판매대, 쇼케이스	107.8㎡ (4실)	162.2㎡ 컨베이어, 포장기 등	82.5㎡	180㎡ 사무실, 회의실

- 위탁대상 사무범위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농가 생산자 조직 구성 교육 등 각종 보조사업
- 위탁시설 관리 운영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조직화
- 기타 거창푸드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소요예산 : 연 390,000천원 정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로컬푸드 교육 및 홍보비 등
-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19. 11월 중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19. 12월 초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시설점검 : 2019. 12월 중순
 - 수탁운영 실시 : 2019. 12. 24.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동의안은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을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등을 근거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하는 것임.

- 그간 거창푸드종합센터는 2013년부터 민간 위탁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켜 운영한 사례가 있는 등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학교급식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 가. 제안이유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자재 수급을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그간의 운영 노하우 활용을 위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대 행 기 관 : 거창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 창 열)
 - 연 장 기 간 : 2020. 2. 1. ~ 2023. 1. 31.(3년)
 - 현)대행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

나.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 위 치 : 거창군 거함대로 3372-30
- 준 공 일 : 2011. 11. 12
- 시설규모 : 4,017m² / 건축면적 : 1,119m²

- (1층) 입하장, 전처리시설, 소포장실, 출하장
- (2층)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

□ 운영현황

- 운영주체 : 거창군 직영(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대행기관 : 거창축협(운영팀 5명, 소분팀 7명, 배송팀 6명)
- 운영내용
 - (거창군) 공급가격 결정, 식자재 계약(군↔학교),
물류 배송 지도·감독
 - (거창축협) 식자재 구매·소분·배송 대행, 시설장비 관리
- 예산지원 : 없음
 - 식자재 조달수수료(10~13%)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
- 그간 위탁·대행 현황
 - 2012 ~ 2016년 :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위탁)
 - 2017 ~ 2020년 : 거창축산업협동조합(대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동의안은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기존 조달대행 업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17년부터 예산지원 없이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 등 연장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영훈 건설과장)

- 가. 제안이유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조성이 완료됨('19.10.2.)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주기장 현황

명 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면 적	6,310㎡ (1,908평)	건축면적	99.75m (30평)	주기면수	약 120대
시설물	관리동 1동 (싱크대, 신발장, 환풍기 2, 수도 2, 전기쿡탑 2구)				

-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탁자 조건 : 거창 군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민간위탁 배경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
 - 건설기계 운행자의 자발적 주기 유도로 주택가·도로변 등 불법주기 개선
- 수탁단체(자) 선정 : 공개모집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수탁단체(자) 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정량+ 정성)
- 공유재산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공개모집)
 - 근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제1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5항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부과대상 : 수탁단체)
 -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 ※ 가격기준 : (토지)공시지가, (관리동) 감정평가
 - 근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
 - 사용기간 : 2년(1회에 한해 갱신 가능)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5년 이내)
 - ※ 최초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사용기간 2년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조성이 완료('19.10.2.) 됨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수탁단체에 행정재산 사용료(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부과하고, 수탁단체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운영하는 것임.
 - ※ 가격기준 : (토지)공시지가, (관리동) 감정평가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출연금 출연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 업 비 : 25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200	250	250	-	-	250	-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다. 부서의견

-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되고 경기침체 불안과 저이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의 확보심리 등의 이유로 2019년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이 100억원에서 150억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었음.
-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2020년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을 200억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또한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17.74%, 경남도 30.5%, 시·군 5%, 금융기관 42.77%, 기업체 등이 3.99%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9년 2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 가.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사업을 통한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출연금 출연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80	180	180	-	109	71	-

- 2018년 ~ 2020년(3년) 연차사업으로 2020년 균특 지방이양 되어 도비로 편성되었으나 3년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전액 편성되었음

○ 사업내용

- 산림 석골재자원 품질 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
 - 표면가공복합기법
 -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다. 부서의견

- 우리 군 실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재산업계의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석재자원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국내 석재산업 선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2020년 종료되며,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국도비에 군비를 매칭하여 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석재에 함유된 라돈 등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불안감이 조성되었지만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라돈, 석면 등의 유해성 분석을 실시하여 거창화강석이 안전한 석재임을 입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등의 추진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 및 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번 사업은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적 석재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임(2015년 178백만원, 2016년 309백만원, 2018년 180백만원, 2019년 80백만원 지원).

-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을 완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승인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10. 21.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11.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 가.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출연금 출연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180	180	180	-	-	180	-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다.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18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와 연구,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